

2023년 2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

가점 증빙 서류 안내

가점증빙서류(해당자)

- 가점증빙서류는 결격사유는 아니나 가점으로 인해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가점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 가점 사항 중 1개만 선택하여 그에 맞는 서류를 증빙하여 주시면 됩니다.

가점 해당사항

- 육아기 자녀 부양

- 가구원인 자녀가 2014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

- 여성가장
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60세 이상 또는 18세미만이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
 - ※ 근로능력 없음 : 장애인, 병역 의무, 학생,
- 본인 이외에는 가족구성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어야 인정됨 / 1인 가구는 여성가장 인정X

- 장애인 : 본인

- 결혼이민자

- F2, F5, F5 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
- 한국인과 결혼한 국적취득자

- 북한이탈주민

-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
-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

- 성매매피해자

- 갱생보호대상자

-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

- 노숙인

가점 증빙서류

- 육아기 자녀 부양

- 증빙 서류 없음
- ※ 주민등록등본상 관계의 자녀 및 자녀의 생년월일로 가점 판단함

- 여성가장

-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(구성원 모두)의 근로능력 없음 증빙 서류 : 실종신고서, 장애인등록증, 의사진단서, 복무확인서, 재학증명서, 수용증명서, 이혼소송확인서 등

가점 증빙서류

- 장애인

- 장애인증명서, 복지카드 등 본인 장애인 여부 확인 서류

- 결혼이민자

- 국적취득자 :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
- 국적미취득자 : 외국인등록증(F2, F5, F6 비자 확인)과 혼인관계증명서

가점 증빙서류

- 북한이탈주민

-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
-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
- 한부모가족증명서

- 성매매피해자

- 성매매피해여성쉼터,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

가점 증빙서류

- 북한이탈주민

-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
-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
- 한부모가족증명서

- 성매매피해자

- 성매매피해여성쉼터,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

가점 증빙서류

- 갱생보호대상자

-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갱생보호법인 지원 확인서

-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

- 교정시설(교도소, 구치소)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(2022년 11월 30일 이후)

- 노숙인

- 관련시설(노숙인 쉼터, 상담보호센터 등)에서 받은 추천서

가점 증빙서류

- 갱생보호대상자

-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갱생보호법인 지원 확인서

-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

- 교정시설(교도소, 구치소)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(2022년 11월 30일 이후)

- 노숙인

- 관련시설(노숙인 쉼터, 상담보호센터 등)에서 받은 추천서

가점증빙서류(해당자)

해당 서류를 신청서에 업로드(클릭 또는 드래그)

	<p>클릭 또는 드래그하여 파일을 첨부하세요</p>
[해당자] 경력증명서	<p>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선정 상의 가점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클릭 또는 드래그하여 파일을 첨부하세요</p>
[해당자] 가점 증빙 서류	<p>가점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가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.</p> <p>첨부서류는 위에서 체크하신 가점 해당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가점 해당 사항 : 여성가장, 장애인(본인 해당), 결혼이민자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성매매피해자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, 노숙인</p> <p>클릭 또는 드래그하여 파일을 첨부하세요</p>

← 이전

임시저장

최종제출

가점증빙서류(해당자)

주의사항

1. 가점증빙서류는 결격사유는 아니나 가점으로 인해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. 가점은 신청서에 본인이 가점 해당사항에 반드시 체크해야 인정됩니다. 가점 해당사항에 체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가점 해당사항에 체크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 됩니다.

*5. 가점해당사항

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시면 선발 상의 가점이 있으며 가점을 체크하였다면 가장 아래부분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.
(가점을 체크하더라도 가장 아래 부분의 증빙서류 제출란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가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.)

- | | | |
|--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| 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기 자녀(만 8세 이하) 부양 (가구원인 자녀가 2014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여성가장 :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60세 이상 또는 18세미만이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(첨부서류 : 가족관계등록부, 복무확인서 등)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(본인 해당) (첨부서류 : 장애인증명서, 복지카드 등) | <input type="checkbox"/> 결혼이민자 (첨부서류 :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) | <input type="checkbox"/> 북한이탈주민 (첨부서류 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)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(첨부서류 : 한부모 가족 증명서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매매피해자 (첨부서류 : 성매매피해여성쉼터,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) | <input type="checkbox"/> 경쟁보호대상자 (첨부서류 :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경쟁보호법인 지원 확인서)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(첨부서류 : 교정시설 (교도소, 구치소)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) | <input type="checkbox"/> 노숙인 (첨부서류 : 관련시설(노숙인 쉼터, 상담보호센터 등)에서 받은 추천서) | |